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1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월 10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1. 10.(화)	담당부서	재생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5370)	담 당 자	김혜원 사무관(044-203-5372)

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

-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, 대규모·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-

-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(최대 0.1)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-

②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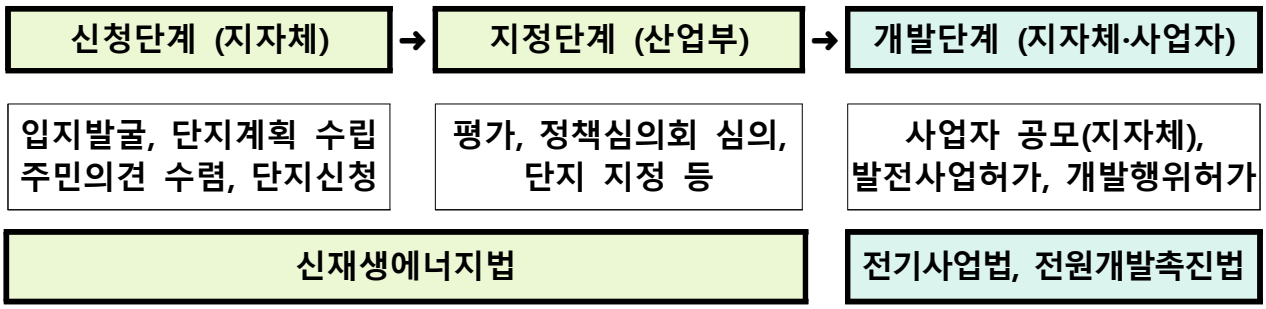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**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**하기 위해, **「신·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·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**(이하 '집적화단지 고시') **제정을 완료하고** '20.11.11.(수) **시행**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에 제정된 **집적화단지 고시**는 10.1일 시행된 **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**로, 입지 요건, 민관협의회 운영, 사업계획 수립·평가 등 **집적화단지 조성·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**하였다.

□ 집적화단지는 **40MW 이상 태양광·풍력 등**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,

○ **지자체**가 **입지발굴, 단지계획 수립,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**하고,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**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**하게 된다.

<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(안) >



○ 집적화단지 추진시 **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** 지역 주민·어민 등 **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·운영**해야 하며,

- 민관협의회에서는 **입지 후보지역**,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(REC)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**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공유, 영농·해양환경,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**을 협의하게 된다.

○ 아울러,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**지자체 주도형 사업**으로 인정하고 **REC 추가 가중치(최대 0.1)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**하여 신재생 발전사업이 **지역사회 발전에 기여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지자체의 입지발굴,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,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 도입 예정

○ 이번 고시 제정은 **지자체 주도**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**난개발을 방지**하고 **체계적 개발을 도모**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.

- 아울러, 지역주민 등 **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**하고,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(최대 0.1),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(최대 0.2)를 통해 **지역사회·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**되어 **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.**

□ 한편, 산업부는 **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(별표2 개정)**한 **「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**(이하 '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')를 개정하였다.

○ 현재 **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**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**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**이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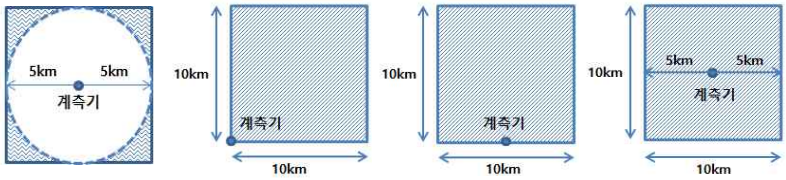
- 일정 조건* 만족시 **유효지역**을 **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km²**으로 할 수 있고, 이 때 계측기 1기당 **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(80km²)**하게 설정할 수 있다.

*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(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)가 있는 경우

○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**효율적 풍력단지 배치**가 보다 용이해지고,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**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이나, 現 계측기 유효지역(반지름 5km)은 원형으로 규정되어 효율적인 단지배치에 제한

<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기준 현행 및 개정안 >

현 행	개정안
•유효지역: 반지름 5km 이내	•유효지역: 반지름 5km 이내. 단,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(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)가 있는 경우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² 가능
•개발면적: 유효지역과 동일(78.5km²)	•개발면적: 유효지역내 80km²
예시 	

□ 이번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**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**을 **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추진**하고,

○ 이를 통해, **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**와 **그린뉴딜 실현**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혜원 사무관(☎ 044-203-53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**

단계	주요내용
입지발굴 입지요건 (제4조)	• **(입지발굴)** 실시기관(지자체)이 자체 발굴 또는 공기업.공공기관.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 발굴 가능 • **(입지요건)** 태양광.풍력 등 적합한 자원 보유, 전원(電源)개발행위 및 부지.기반시설 조성 가능,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조성, 신재생 산업생태계 강화에 기여 등 • **(용량기준)** 발전용량 40MW 초과
주민수용성 확보 (제5~6조)	• **(민관협의회)** 구성원 및 협의사항 규정, 민관협의회 협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 * **(구성)**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,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전담기관, 전문가 등 20인 내외 * **(협의사항)** 입지 후보지역,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, 농림·해양환경·산림보호 등 환경 관련 사항 등 • **(의견청취)** 일간신문 1회 이상 공고, 홈페이지 14일 이상 게시, 주민 등 30명 이상 공청회 등 설명회 개최
사업계획 수립/ 집적화단지 신청 (제7~8조)	• **(계획수립)**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 포함사항 규정 * 집적화단지 명칭·위치·면적, 지자체 역할 및 이행계획, 인허가 추진계획, 계통연계방안, 수용성·환경성 확보계획, 주민 이익공유 계획 등 • **(지정신청)** 집적화단지 지정신청 전 완료해야 하는 사항 규정 * 민관협의회 협의, 주민·관계전문가 의견청취, 광역·기초지자체 협의, 사전입지컨설팅
평가 (제9, 12조)	• **(평가기간)** 전담기관(에공단 신재생센터)은 60일내 평가, 20일에 한해 검토기한 연장가능(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가능) • **(평가위원회)** 관련분야 산.학.연 등 20인 내외 평가위원단 구성(간사: 에공단) → 위원단 중 1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• **(평가방법)** 최고·최저점수 제외 산술평균(소수점 2자리 반올림), 최종평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 상정
지정·해제 이행확인 (제14, 16~17조)	• **(지정)**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평가결과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, 공고 /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 통해 선정가능 • **(해제)** 지정일로부터 3년 내 발전사업 미허가, 전촉법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단지개발 미착수 등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가능 • **(이행확인)** 매년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확인, 점검

참고 **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등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【별표 2】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	【별표 2】 --- ---
4. “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(이하 “유효지역”이라 한다)“ 은 다음과 같다.	4. (현행과 같음)
가.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: 반지름 5㎞이내	가.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: 반지름 5km 이내. 단,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(우선권 여부와 무관)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^2 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^2 까지 가능
나. 산악, 심한 비탈(경사도 17°이상)이 있는 복잡지역 : 반지름 2㎞이내	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: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	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: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	라. (현행과 같음)
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	부칙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풍력발전 풍황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단서부분에 관한 적용례)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하며,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.